| 투자위험등급 : 5등급[낮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HDC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HDC디딤모아주고막아주는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HDC디딤모아주고막아주는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 합 투 자 기 구 명 칭 : HDC디딤모아주고막아주는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HDC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25년 4월 2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5월 1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조원]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 할 수 있습니다.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 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입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 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 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8.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클래스 가입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 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3. 모집예정금액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5. 인수에 관한 사항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4. 집합투자업자
-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1. 매입, 환매, 전환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의 정리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5.04.23

HDC 디딤모아주고막아주는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펀드코드: B8091]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3 4 2 5 6 매우 다소 매우 높은 낮은 보통 높은 높은 낮은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HDC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주식가격 하락위험, 원본손실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HDC디딤모아주고막아주는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 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1) 주요 투자전략

- ▶ 자산배분 전략 : 채권 60% 이상 + 주식 30% 이하
- 주식 부문은 펀드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적극적인 편입 비중 조정 (편입비 0~30%)
- ▶ 주식운용전략
 - KOSPI지수의 일방적 추종을 배제하고 시장 기회 판단 시에만 진입하여 주도주 단기 트레이딩
- 시장 유형별 차별화된 대응 전략(주식편입비중 30% 이내 및 펀드성과별 주식운용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비중 조정)
- 공모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운용전략 구사 : 높은 수준의 자본차익 추구가 예상되는 공모주에 적 극 투자하여 시장금리+@ 이상의 성과 추구

▶ 채권운용전략

- 듀레이션 2년 이하의 안정적 성과목표(신용등급 AA이상)
- 듀레이션 전략: 대내외 펀더멘털 분석, 통화정책 및 수급 전망, 중기적 관점 접근
- 수익률 곡선 전략 : 기준금리 대비 금리차이분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만기 비중 확대전략
- 밸류에이션 : 신용등급 상향 종목 예측,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 매수와 고평가된 종목 매도

(2) 비교지수 : KOSPI*15% + KIS국고채 1~2년*70% + Call*15%

주)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법령에 서 정한 절차(수시 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연, %) | | | |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 | | | |
|--------|--------------------------------------|---------|----------|-----------------|----------------|-----|---|-----|-----|------|--|
| 클래스 종류 | 판매 수수료 | 총 보수 | 판매 보수 | 동종 유형 총보수 | 총 보수· 비용 | 1 년 | 2 년 | 3 년 | 5 년 | 10 년 |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0.5%이내 | 0.932 | 0.60 | 0.750 | 0.9385 | 145 | 245 | 348 | 567 | 1,196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 없음 | 1.232 | 0.90 | 1.100 | 1.2386 | 127 | 259 | 395 | 684 | 1,505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5%이내 | 0.682 | 0.35 | 0.630 | 0.6884 | 120 | 193 | 269 | 431 | 901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없음 | 0.832 | 0.50 | 0.720 | 0.8386 | 86 | 175 | 269 | 467 | 1,039 |

-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2)종류 A(선취판매수수료 포함)와 종류 C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선취판매수수료 포함)와 종류 C-E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또는 종류별 설정시점, 성과,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투자실적 |
|-------|
| 추이 |
| (연평균 |
| 수익률, |
| 단위 %) |

| | 최초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
|--------------------|------------|--------------|--------------|--------------|--------------|------|
| 종류 | 설정일 | 2023/11/04 ~ | 2022/11/04 ~ | 2021/11/04 ~ | 2019/11/04 ~ | 이후 |
| | | 2024/11/03 | 2024/11/03 | 2024/11/03 | 2024/11/03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 2015-11-04 | 5.27 | 3.92 | 2.24 | 3.26 | 2.82 |
| 비교지수 | 2015-11-04 | 5.08 | 4.49 | 1.78 | 2.59 | 2.21 |
| 수익률 변동성(%) | 2015-11-04 | 2.54 | 2.32 | 2.31 | 2.80 | 2.53 |

- 주1)비교지수 : KOSPI*15% + KIS국고채 1~2년*70% + Call*15%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ころりもヒナッフ

| | | | 운용현황 | | 연평균 | | | | |
|-----------|-----------|-------------------------|------------|--------------|--------|--------|--------|--------|---------------|
| 성명 | 생년 | 직위 | 집합 투자기구 | 운용규모 (억원) | 운용역(%) | | 운용사(%) | | 운용 경력년수 |
| | | | 수(개) |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
| <주식운 | <주식운용 부문> | | | | | | | | |
| 장승성 | 1990 | 책임운용 (과장) | 12 | 3,297 | 4.98 | 5.03 | 4.66 | 5.22 | 5 년 4 개월 |
| 정동욱 | 1979 | 부책임운용 (수석매니저) | 19 | 3,923 | 5.07 | 5.46 | 4.66 | 5.22 | 10 년 10 개월 |
| <채권운용 부문> | | | | | | | | | |
| 허정기 | 1973 | 책임운용 (수석매니저) | 15 | 5,982 | 4.66 | 5.22 | 4.66 | 5.22 | 18 년 3 개월 |

운용전문 인력

-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상기 운용전문인력 모두 해당사항 없음
-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국내 주식투자파트 및 국내 채권투자파트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 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5)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 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 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입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투자원본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 시장 위험 및 개별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재산의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
| | 주식가격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
| | 변동위험 |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주요투자 위험 | 이자율(금리) 변동 위험 | 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투자전략상 위험 | - 이 투자신탁은 일반 주식 매매 전략, 공모주 및 이벤트 활용 전략, 주식시장 이례 현상 활용전략, 채권투자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전략 실행 과정에는 투자신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매매 시 시장 충격 및 비용 지출, 상/하한가 제한, 거래 정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대량 환매, 빈번한 설정/해지가 있을 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투자전략이 실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 결산후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펀드성과에 따라 주식운용한도가 사전에 설정 되지만, 펀드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주식운용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



| | | | | - 01 01 01 -+1 = | | | | | |
|----------------|---|--------------|--|----------------------|-------------|---|--|--|--|
| | | | | | | 기저지 나자그라니요 등 보기되 | | | |
| | | | | | | 래정지,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 업일(한국거래소 기준)로 합니다. | | | |
| | | | | | |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 | | |
| | 집합투자기 | | | | | 한 두 [†] 현이 되는 말에 전는복이 기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 | | | |
| | 해지 위험 | | | | | -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 | | |
| | 91174 116 | | 의 한민국의 30국년 기 될 수 있습니다. | EE 01 0 | -1 0 1 11 L | | | | |
| | ※ 자세한 투 | | | 자기구에 관한 | 사항 중 10.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여 | | | |
| | 주시기 바랍니 | 다. | | | | | | | |
| | 17시 | | | | 17시 | 3영업일 기준가 적용, | | | |
| nii Ol | 이전 | 2영업일 | 기준가 적용 매입 | 환매 | 이전 | 4영업일 관련 세금 등 공제 후 대금 지급 | | | |
| 매입 방법 | | | | 완매 방법 | | 4영업일 기준가 적용, | | | |
| 0.1 | 17시 | 3영업일 | 기준가 적용 매입 | O H | 17시 | 5영업일 관련 세금 등 공제 후 | | | |
| | 경과후 | | | | 경과후 | 대금 지급 | | | |
| 환매수수료 | 없음 | | | | | | | | |
| | | ELOL 7 | 1조기계 (지어 지하드 | | ± 01 | ************************************** | | | |
| | │ | | • | | | 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 | |
| 기준가 | | |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hdc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 | | | | | |
| | □ 공시상수 □ | | 론 영급점, 급급구시 홈페이지 (dis.kofia.or.kr) | | | · 현대회사 · 현국급융구사합회 | | | |
| | | | 12 0 (UIS.KOTIA.OT.KI) | VII / II / I I I I I | 1. | | | | |
| | 구 분 | | 과세의 주요내용 | | | | | | |
| | 집합투자기 |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 | | | | | |
| | |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 독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 | | | | | |
| | 수익자 | | 국제 포함) 제출도 원신청구 됩니다. 인, 인신 음룡조득립계획이 기군음획을 조파아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 | | | | | | |
| | | | 마세 됩니다. | | | | | | |
| 과세 | 퇴직연금제 | L | 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 | | | | | |
| | 의 세제 | 시 괸 |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 | | | | | | |
| | 여근저추게 | | 니다. ·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 계좌에 | | | | | | |
| | | | 서 자금 인출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 | | | | | |
| | 과세 | 참고현 |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과세에 다 | 한 자세함 | 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 참고하시기 | 바랍니다. | |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 | 음 | | | | | | | |
| 집합투자업자 | HDC자산운용 | 용㈜ (대표 | 번호: 02-3215-3000 / | 인터넷 홈페이 | 기 : www.h | ndcasset.com) | | | |
| 모집기간 | 효력발생 이 | 후 계속 . | 모집 가능 | 모집. 매출 총 | ·액 1조좌 | | | | |
| 효력발생일 | 2025년 5월 15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 | | |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 | | | | | | | |
| | | | | <u> </u> | | 제3부 1. 재무정보 및 제4부 1. | | | |
| 참조 | | |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 | | 1/120/1 | M31 1. M1 62 & M41 1. | | | |
| | 이 집합투자 | 기구는 종 | 등류형 집합투자기구입L | - 다. 집합투지 | 기구의 종류 | 부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 | | | |
| | -기타 펀드특 | 투성에 따i | 라 3 단계로 구분 되며, | 집합투자기구 | 종류의 대표 | 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 종류(CI | ass) | | 집합 | 투자기구의 특 | 특징 | | | |
| ⊐ ਰਜ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 낮게 책정되므 | 로 총비용이 | 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 | | | |
| | | | '삼는 딱 1 년 5 개월이 경 | 3파되는 시심입 | 니다. 따라서 |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 | | | |



| | | | 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온라인(E) 판매 |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 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 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경로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 퇴직연금 (P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
| | | 개인연금 (P2)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71 EL | 고액(I) |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기타 | 랩(W) |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
| | | 무권유 저비용(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기관(F) |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dc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dcasset.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HDC디딤모아주고막아주는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B8091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B8092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B882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B8093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B809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B809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고액(C-F) | B809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금전신탁(C-W) | B809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 B8096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 BZ78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 B969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 BZ786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BO89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BO896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주)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 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 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ㆍ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u>www.kofia.or.kr</u>) 및 집합투자업자(<u>www.hdcasset.com</u>)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HDC디딤모아주고막아주는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B8091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B8092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B882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B8093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B809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B809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고액(C-F) | B809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금전신탁(C-W) | B809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 B8096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 BZ78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 B969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 BZ786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BO89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BO896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시행일 | 주요 내용 |
|------------|--|
| 2015.11.04 | - 최초 설정 |
| 2015.11.10 | - Class A-E 신설 |
| 2016.07.02 |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투자위험 등급 6단계 체계로 변경) |
| 2017.04.29 | - Class A-G, Class C-G 신설(클린클래스 신설) |
| 2017.11.16 | - Class C-Pe, Class C-P2e 신설 |
| 2018.03.12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건민 → 이종환) |
| 2018.03.30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서용진 → 정관옥) |
| 2018.11.15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종환 → 강병희) |
| 2019.09.25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 반영 |
| 2021.02.01 |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홍호덕 → 강병희) |
| 2021.07.02 |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강병희 → 홍찬양)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정관옥 → 이용재) |
| 2021.12.30 |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홍찬양 → 홍찬양, 이용재)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용재 → 양형모, 이상) |
| 2022.03.03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양형모, 이상 → 장승성, 이상) |
| 2022.06.29 | - 채권 부문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용재 → 허정기) |



| 2022.12.16 |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정기 갱신 - 종류 C-Pe 및 C-P2e 가입자격 오기 수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
|------------|--|
| 2023.03.24 | - 주식 부문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홍찬양 → 정동욱) |
| 2023.06.08 | - 주식 부문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 정동욱 → 장승성 / 부책임 : 장승성 → 정동욱) |
| 2023.06.30 | - 채권 부문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 허정기 → 이상 / 부책임 : 이상 → 허정기) |
| 2023.11.30 |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정기 갱신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세제)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 2024.09.25 | - 펀드명 변경(변경후 : HDC디딤모아주고막아주는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 2024.12.20 |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정기 갱신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사항 반영(표준편차 → 최대손실예상액)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환매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세제) |
| 2025.02.20 | - 채권 부문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상 → 허숭구) - 세법 개정사항 반영(외국납부세액) |
| 2025.05.15 | - 채권 부문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 허숭구→허정기 / 부책임 : 허정기→미지정)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회 사 명 | HDC자산운용(주)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대영빌딩 2층 (우 : 07333) (대표전화 : 02-3215-3000) |

주)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2025.04.23 기준)

| ин | | ! 직위 | 직위 | 직위 | 직위 | | 동종집합· 용현황 연평균 수 (국내 채균 | | | 수익률(%) | | |
|------|-----------|--------------------------|------|-------|------|------|------------------------------|--------|---|--------|--|-------------|
| 성명 | 생년 | | | | | 집합 | 운용 | 운용역(%) | | 운용사(%) | |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
| | | | 투자기구 | | 최근 | 최근 | 최근 | 최근 | | | | |
| | | | | 수(개) | (억원) | 1년 | 2년 | 1년 | 2년 | | | |
| <주식은 | <주식운용 부문> | | | | | | | | | | | |
| 장승성 | 1990 | 책임 운용 (매니저) | 12 | 3,297 | 4.98 | 5.03 | 4.66 | 5.22 | * 운용경력 : 5년 4개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6.07~'19.12 DB손해보험 주식운용 | | | |



| 정동욱 | 1979 | 부책임 운용 (수석 | 19 | 3,923 | 5.07 | 5.46 | 4.66 | 5.22 | - '19.12~'21.10 베어링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21.10~(현재) HDC자산운용 국내 주식투자파트 * 운용경력: 10년 10개월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10.05~'12.06 한가람투자자문 주식운용팀 - '12.08~'14.07 LIG 투자자문 주식운용팀 |
|--|------|-------------------------|-------|---------|------|------|------|------|---|
| ~채궈 | 운용 두 | 매니저) 보무 > | | | | | | | - '14.08~'21.05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21.06~(현재) HDC 자산운용 국내 주식투자파트 |
| ************************************** | | | | | | | | | * 운용경력 : 18년 3개월 |
| | | | | | | | | |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 | | 책임 운용 (수석 | 운용 15 | 5,982 4 | | | | | - '00.01~'05.09 동양증권 지점 마케팅 |
| 허정기 | 1973 | | | | 4.66 | 5.22 | 4.66 | 5.22 | - '05.10~'07.02 동양자산운용 경영관리/인사 - '07.03~'13.02 동양자산운용 채권운용 |
| | | 매니저) | | | | | | | - '13.02~'21.07 흥국자산운용 채권운용 |
| | | | , | | | | | | - '21.08~'22.04 파인만자산운용 채권운용 |
| | | | | | | | | | - '22.04~(현재) HDC 자산운용 국내 채권투자파트 |

-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상기 운용전문인력 모두 해당사항 없음
-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국내 주식투자파트 및 국내 채권투자파트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 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5)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구분 | 성명 | 운 용 기 간 |
|-----------|-----------------|---------------------------------------|
| | 홍호덕 | 최초 설정 ~ 2021.01.31 |
| | 강병희 | 2021.02.01 ~ 2021.07.01 |
| | 홍찬양 | 2021.07.02 ~ 2021.12.29 |
| | 홍찬양/이용재 | 2021.12.30 ~ 2022.06.28 |
| 책임운용전문인력 | 홍찬양/허정기 | 2022.06.29 ~ 2023.03.23 |
| 역심한중인한인국 | 정동욱/허정기 | 2023.03.24 ~ 2023.06.07 |
| | 장승성/허정기 | 2023.06.08 ~ 2023.06.29 |
| | 장승성/ <u>이상</u> | <u>2023.06.30 ~ 2025.02.19</u> |
| | 장승성/ <u>허숭구</u> | <u>2025.02.20</u> ~ <u>2025.05.14</u> |
| | 장승성/ <u>허정기</u> | <u>2025.05.15 ~ 현재</u> |
| | 서용진/이건민 | 2015.10.23 ~ 2018.03.11 |
| | 서용진/이종환 | 2018.03.12 ~ 2018.03.30 |
| | 정관옥/이종환 | 2018.03.30 ~ 2018.11.14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정관옥/강병희 | 2018.11.15 ~ 2021.01.31 |
| | 정관옥 | 2021.02.01 ~ 2021.07.01 |
| | 이용재 | 2021.07.02 ~ 2021.12.29 |
| | 양형모/이상 | 2021.12.30 ~ 2022.03.02 |



| 장승성/이상 | 2022.03.03 ~ 2023.06.07 |
|---------|-------------------------|
| 정동욱/이상 | 2023.06.08 ~ 2023.06.29 |
| 정동욱/허정기 | 2023.06.30 ~ 2025.05.14 |
| 정동욱 | 2025.05.15 ~ 현재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 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그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ठ त्त | (Ciass) | |
| 판매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 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수수료 | 수수료 미징구 (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1년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경로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퇴직연금 (P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개인연금 (P2)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7151 | 고액(I) |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기타 | 랩(W) |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무권유 저비용(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기관(F) |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주)종류(Class)별 구체적인 가입자격,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종 류별 가입자격" 및 "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 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 |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1} | | 투자대상 내역 |
|-----|-------------------------|---------------------|---|
| 1 | 주식 | 30% 이하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 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 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
| 2 | 채권 | 60% 이상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제외한다) |
| 3 | 집합투자증권 등 | 30% 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단, 주식과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 환매조건부 매도 | (증권총액 기준)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
| (5) | 신탁업자와의 거래 |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주1)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① 내지 ③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① 내지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투자 제한 | 투자 제한의 내용 |
|----|-------------------|---|
| 1 |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 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 우를 말한다) |
| 2 | 동일종목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에 그 시가 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급 사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 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
| 3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
| 4 | 계열회사 발행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ō. | 난도 및 제한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② 내지 ④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 ② 본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 자산배분전략

- ✓ 채권 60% 이상 + 주식 30% 이하
- ✓ 주식부문은 펀드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적극적인 편입 비중 조정(편입비 0~30%)

▶ 주식운용전략

- ✓ KOSPI지수의 일방적 추종을 배제하고 시장 기회 판단 시에만 진입하여 주도주 단기 트레이딩
- ✓ 시장 유형별 차별화된 대응 전략(주식편입비중 30%이내 및 펀드성과별 주식운용 한도내에서 적극적인 비중 조정)
- ✓ 펀드 성과 별 주식운용 한도 설정
 - 1단계 : 수익률 방어단계(직전 결산후 기준가격의 96.5%~98%, 주식운용한도 0~5%)
 - 2단계: 수익률 구축단계(직전 결산후 기준가격의 98%~101%, 주식운용한도 0~10%)
 - 3단계: 수익률 제고단계(직전 결산후 기준가격의 101%~104%, 주식운용한도 0~20%)
 - 4단계 : 수익률 상승단계(직전 결산후 기준가격의 104%초과, 주식운용한도 0~30%)
 - ※ 직전 결산후 기준가격의 96.5% 이하 진입시 주식운용 중단(단, 공모주 투자는 NAV의 5%이내 가능) 단, 96.5% 초과 구간에 재진입 시에는 위 단계 별로 정상 운용 재개함
 - ※ 직전 결산후 기준가격은 직전 회계기말 결산후 기준가격을 의미하며, 최초 설정의 경우 1,000원을 의미함 (종류형 운용펀드 기준)
 - ※ 펀드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단계가 이동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포함 3영업일(한국거래소 기준) 내에 변경된 주식운용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함. 다만, 천재지변 또는 거래정지,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해당 사유 종료일 포함 3영업일(한국거래소 기준)로 함
 - ※ 매년 펀드 결산후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펀드 성과에 따른 주식운용한도 사전 재설정
- ✓ 공모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운용전략 구사 : 높은 수준의 자본차익 추구가 예상되는 공모주에 적극 투자하여 시장금리+@ 이상의 성과 추구
 - ① 시장상황,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을 고려
 - ② 철저한 분석과 벨류에이션을 통해 참여 여부 및 참가가격을 결정하여 수요예측에 참가
 - ③ 수요예측을 통해 물량을 받은 종목들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매도가격 및 매도 타이밍을 계산하여 수익률 극대화를 도모
 - ※ 공모주청약은 참여기관이 많은 경우 받는 양이 제한적일 수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권운용전략

- ✓ 듀레이션 2년 이하의 안정적 성과목표(신용등급 AA이상)
- ✓ 듀레이션 전략 : 대내외 펀더멘털 분석, 통화정책 및 수급 전망, 중기적 관점 접근
- ✓ 수익률 곡선 전략 : 기준금리 대비 금리차이분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만기 비중 확대전략
- ✓ 밸류에이션 : 신용등급 상향 종목 예측,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 매수와 고평가된 종목 매도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비교지수: KOSPI*15% + KIS국고채 1~2년*70% + Call*15%

주1)비교지수 선정사유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투자 비중 및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시장수익률과 공정한 성과 비교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주2)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 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KOSPI(한국종합주가지수) :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합 주가 지수로서, 유가증 권시장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식 지수
- KIS국고채 : 국내 대표적인 채권평가회사의 하나인 KIS채권평가에서 발표되는 채권지수로서,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 중 잔존만기 1~2년물로 구성된 지수
- Call금리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로서, 한국자금중개, KIDB자금중개, 서울외국환 중개에서 체결된 콜거 래 가중평균 금리

(3) 위험관리전략

- 채권 투자 유니버스 관리 및 사전 사후 점검(국공채, 금융채 등 AA등급 이상)
- 매년 펀드 결산 후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주식 운용 한도 사전 설정 및 사전 사후 모니터링 강화
- 직전 결산 후 기준가격의 96.5% 이하 진입시 주식운용 중단과 관련된 사전 사후 관리 철저
- 직전 결산 후 기준가격의 96.5% 이하 진입시 기간 확약 공모주의 경우 투자 심사 강화
-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혼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다음 투자 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켜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 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시장 위험 및 개별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재산의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이자율(금리) 변동 위험 | 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증권 및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 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 기구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 · |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집중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하므로,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이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있습니다. |
| 투자전략상 위험 | - 이 투자신탁은 일반 주식 매매 전략, 공모주 및 이벤트 활용 전략, 주식시장 이례 현상 활용전략, 채권투자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전략 실행 과정에는 투자신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매매 시 시장 충격 및 비용 지출, 상/하한가 제한, 거래 정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대량 환매, 빈번한 설정/해지가 있을 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투자전략이 실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 결산후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펀드성과에 따라 주식운용한도가 사전에 설정되지만, 펀드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주식운용한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포함 3영업일(한국거래소 기준)내에 변경된 주식운용한도에 따라 운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거래정지,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사유 종료일 포함 3영업일(한국거래소 기준)로 합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펀드규모위험 | 투자신탁의 설정 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환매대금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 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u>'실제 수익률 변동성'</u>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 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하 'VaR')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4.87%이며, 5등급(낮은위험)에 분류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30% 이하를 주식, 60% 이상을 채권에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채 권혼합형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높은 위험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낮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의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주식에의 투자를 통해 초과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로서 국내 경제여건 변화, 채권/주식시장 및 개별 기업의 재무·영업 환경 등이 채권/주식의 가치변동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매 결산시마다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예 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변경 내역

| | 변경일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
| 2 | 016.7.2 | 3등급 | 5등급 |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 개편▶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

[HDC 자산운용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97.5% VaR 모형 사용)]

| + | 등급 | 1 등급 (매 우높은위 험) | 2 등급 (높은위험) | 3 등급 (디소 높은 위험) | 4 등급 (보통위험) | 5 등급 (낮은위험) | 6 등급 (매 우낮은위 험) |
|-------|-----------------------|-------------------------------|----------------|-------------------------------|----------------|----------------|-------------------------------|
| 97.5% | 6 VaR ^{주 1)} | 50% 초과 | 50% 이하 | 30% 이하 | 2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주 1) 과거 3 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 종류별 | 가입자격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판매회사의 전자매채(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판매회사의 전자매채(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l) | 최초 납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고액(C-F) |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 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 금전신탁(C-W) |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Wrap)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 금전 신탁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 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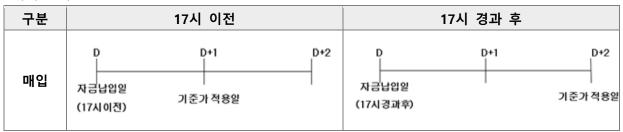
[※]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시장위험 기준에 의한 것이며, 환율위험,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및 파생상품 위험(고난도 펀드, 레버리지, 인버스 등) 등 실제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상향하는 등 최종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2)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개인연금(C-P2e)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직접 펀 드를 선택·가입하고자 하는 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직접 펀드를 선택·가입하고자 하는 자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 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1)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 권의 기준가격 적용
 - 2)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u>오후 17시 이전</u>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4영업일(D+3)</u>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 **오후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4영업일(D+3)</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5영업일(D+4)</u>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전전영업일)과 그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 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 재산을 처분 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그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 구분 | 중도환매 불가 |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 중도환매 허용 |
|-----------------------------|---------|------------|---------|
|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 | -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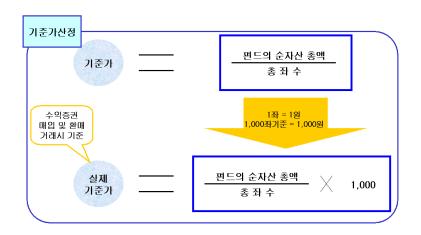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 | | | |
|----------|--|---|--|--|--|--|--|--|
|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 | | | | | | | |
| 산정방법 | 에 계상된 투기 | 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 | | | | | | |
| 신 68 년 | 순자산총액[당 | 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 | | | | | |
| | 종류 수익증권 | 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 | | | |
| 사저즈기 | 기준가격은 미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 | | | |
| 산정주기 |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계산·공시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기 | 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 | | |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 | 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 | | | | |
|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 | | | | |
| 공시장소 | 저미고니 | 집합투자업자(http://www.hdcasset.com), 각 판매회사 및 | | | | | | |
| | 전자공시 |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 | | | | |
| 종류간 기준가격 | 파메버스이 + | 1이 드이크 이취여 가 조르(Class)가 기즈기견이 사이하 스 이스니다. | | | | | | |
| 이 상이한 이유 | 펀메모구의 ^ | 자이 등으로 인하여 각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 | |

주)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해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대상자산 | 평 가 방 법 | | | | |
|---|--------|---|--|--|--|--|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 | | | |
| 1 | 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 | |
| 2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 | | | |
| | 비상장채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기 '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 | | | |
| 3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 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 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 | | | |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분 | 주요내용 | | | | | | | |
|----|---|--|--|--|--|--|--|--|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 | | | | | |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 | | | |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종류형 명칭 |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 | 해당사항 없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고액(C-F) | 해당사항 없음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금전신탁(C-W) | | 해당사항 없음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해당사항 없음 | | | |
| 부과기준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

주)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 | | | | | 지급비율 | (연간, % |) | | | |
|-------------------------|----------------------|----------------|----------------|----------------------------|---------|----------|-----------------|-----------------|-------------------|----------------|
| 종류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 판매 회사 보수 | 신탁 업자 보수 |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 총 보수 | 기타 비용 | 총 보수 • 비용 | 동종 유형 총보수 | 합성 총보수 • 비용 | 증권 거래 비용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0.30 | 0.60 | 0.02 | 0.012 | 0.932 | 0.0022 | 0.9342 | 0.750 | 0.9385 | 0.1055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0.30 | 0.35 | 0.02 | 0.012 | 0.682 | 0.0021 | 0.6841 | 0.630 | 0.6884 | 0.1128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 0.30 | 0.90 | 0.02 | 0.012 | 1.232 | 0.0023 | 1.2343 | 1.100 | 1.2386 | 0.1117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0.30 | 0.50 | 0.02 | 0.012 | 0.832 | 0.0023 | 0.8343 | 0.720 | 0.8386 | 0.1107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C-I) | 0.30 | 0.40 | 0.02 | 0.012 | 0.732 | 0.0024 | 0.7344 | - | 0.7387 | 0.1054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 | 0.30 | 0.03 | 0.02 | 0.012 | 0.362 | - | 0.362 | - | 0.362 | - |



| 고액(C-F) |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금전신탁(C-W) | 0.30 | 0.00 | 0.02 | 0.012 | 0.332 | 0.00 | 0.332 | - | 0.3363 | 0.1083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 | 0.30 | 0.60 | 0.02 | 0.012 | 0.932 | 0.0022 | 0.9342 | - | 0.9386 | 0.1062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Pe) | 0.30 | 0.30 | 0.02 | 0.012 | 0.632 | 0.0023 | 0.6343 | - | 0.6386 | 0.1072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2) | 0.30 | 0.50 | 0.02 | 0.012 | 0.832 | 0.0021 | 0.8341 | - | 0.8385 | 0.1059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P2e) | 0.30 | 0.25 | 0.02 | 0.012 | 0.582 | 0.002 | 0.5840 | - | 0.5883 | 0.1125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 0.30 | 0.40 | 0.02 | 0.012 | 0.732 | - | 0.732 | - | 0.732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 0.30 | 0.60 | 0.02 | 0.012 | 0.932 | - | 0.932 | - | 0.932 | - |
| 지급시기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 | | | 사유 발생시 | - | - | - | 사유 발생시 | |

- * 직전 회계연도 : 2023.11.04 ~ 2024.11.03
- 주1)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 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 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5)이 투자신탁의 설정되지 않은 종류(Class)의 경우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은 기재되지 않았으며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에 합산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 주6)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동종유형 : 국내 채권혼합형, 2024.10.31 기준)
-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 ① 기타비용 종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및 거래비용, 대차거래비용(대 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 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③ 금융비용 종류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증권거래비용(원) | 금융비용(원) | | |
|--------------------|------------|---------|--|--|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 15,095,121 | 0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 * = | 투자기간 | | | | | |
|----------------------|--|------|------|------|------|-------|
| 종류 구분 | | 1년 후 | 2년 후 | 3년 후 | 5년 후 | 10년 후 |
| 수수료선취-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45 | 244 | 346 | 564 | 1,191 |
| 오프라인(A)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45 | 245 | 348 | 567 | 1,196 |
| 수수료선취-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20 | 192 | 267 | 428 | 895 |
| 온라인(A-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20 | 193 | 269 | 431 | 901 |
| 수수료미징구-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27 | 258 | 394 | 682 | 1,500 |
| 오프라인- 보수체감(C)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27 | 259 | 395 | 684 | 1,505 |
| 수수료미징구-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6 | 175 | 267 | 465 | 1,034 |
| 온라인(C-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86 | 175 | 269 | 467 | 1,039 |
| 수수료미징구-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5 | 154 | 236 | 410 | 914 |
| 오프라인-고액(C-I)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76 | 155 | 237 | 412 | 919 |
| 수수료미징구-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37 | 76 | 117 | 204 | 459 |
| 오프라인-기관, 고액(C-F)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37 | 76 | 117 | 204 | 459 |
| 수수료미징구-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34 | 70 | 107 | 187 | 421 |
| 오프라인-랩, 금전신탁(C-W)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34 | 71 | 108 | 189 | 427 |
| 수수료미징구-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96 | 195 | 299 | 519 | 1,152 |
| 오프라인- 퇴직연금(C-P)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96 | 196 | 300 | 521 | 1,157 |
| 수수료미징구-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65 | 133 | 204 | 355 | 793 |
| 온라인-퇴직연금 (C-P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65 | 134 | 205 | 357 | 799 |
| 수수료미징구-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5 | 175 | 267 | 464 | 1,033 |
| 오프라인-개인연금 (C-P2)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86 | 175 | 269 | 467 | 1,039 |
| 수수료미징구-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60 | 122 | 188 | 327 | 732 |
| 온라인-개인연금 (C-P2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60 | 123 | 189 | 329 | 737 |



| 수수료선취-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24 | 202 | 283 | 455 | 953 |
|----------------------|--|-----|-----|-----|-----|-------|
|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24 | 202 | 283 | 455 | 953 |
| 수수료미징구-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96 | 195 | 298 | 518 | 1,149 |
|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96 | 195 | 298 | 518 | 1,149 |

- 주1)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실제 판매수수료율 수준, 기타 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종류 A(선취판매수수료 포함)와 종류 C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선취판매수수료 포함)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또는 종류별 설정 시점, 성과,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이익금을 투자신탁회 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해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등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27조의 규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수 있습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 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 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 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 | | | |
|---|---|--|--|--|--|--|--|--|
| 세액공제 |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포함, 이하 같음)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 | | | | | |
| 과세이연 |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 | | | | | | |
| 과세체계 다양성 |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 | | | | | |
|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
| 수령요건 |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세액공제 | (1) 납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2020.1.1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2)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 세액공제(지방소득세포함).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납입금액의 16.5% 세액공제(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포함) |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 분리과세한도 |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선택 가능[2024년 1월 1 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 연금외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 해지가산세 | 없음 |
| 부득이한 연금외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



| 수령 사유 | 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계좌 승계 |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주)판매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이하 "납입증 명서"라 합니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기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9기(2023.11.04 ~ 2024.11.03) | 회계감사면제 | - |
| 제8기(2022.11.04 ~ 2023.11.03) | 회계감사면제 | - |
| 제7기(2021.11.04 ~ 2022.11.03) | 회계감사면제 | - |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 | 요약재무정 | 정보 | |
|----------|----------------|----------------|----------------|
| ±1 | 제 9 기 | 제 8 기 | 제 7 기 |
| 항 목 | 2024.11.03 | 2023.11.03 | 2022.11.03 |
| 운용자산 | 12,720,320,249 | 15,647,203,893 | 20,998,833,922 |
| 유가증권 | 10,796,293,835 | 12,763,283,519 | 20,698,140,989 |
| 파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324,026,414 | 383,920,374 | 300,692,933 |
| 기타 운용자산 | 1,600,000,000 | 2,500,000,000 | 0 |
| 기타자산 | 51,174,271 | 167,736,660 | 91,471,529 |
| 자산총계 | 12,771,494,520 | 15,814,940,553 | 21,090,305,451 |
| 운용부채 | 0 | 0 | 0 |
| 기타부채 | 840,674,985 | 673,567,866 | 1,402,891,414 |
| 부채총계 | 840,674,985 | 673,567,866 | 1,402,891,414 |
| 원본 | 11,930,819,535 | 15,141,372,687 | 19,687,414,037 |
| 수익조정금 | 0 | 0 | 0 |
| 이익조정금 | 0 | 0 | 0 |
| 자본총계 | 11,930,819,535 | 15,141,372,687 | 19,687,414,037 |
| 운용수익 | 918,345,923 | 734,543,825 | 84,282,472 |
| 이자수익 | 411,258,447 | 459,814,437 | 309,251,212 |
| 배당수익 | 40,514,516 | 57,030,956 | 36,312,537 |
| 매매평가차손익 | 466,552,052 | 217,578,296 | -261,336,122 |
| 기타수익 | 20,908 | 120,136 | 54,845 |
| 운용비용 | 1,193,608 | 1,661,750 | 1,459,744 |
| 관련회사보수 | 0 | 0 | 0 |
| 매매수수료 | 593,548 | 875,750 | 138,264 |
| 기타비용 | 600,060 | 786,000 | 1,321,480 |



| 당기순이익 | 917,152,315 | 732,882,075 | 82,822,728 |
|-------|-------------|-------------|------------|
| 매매회전율 | 632 | 238 | 621 |

주1)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3)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되었습니다.(8기 0백만원 7기 0백만원 6기 0백만원)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원]

| 주스 | · 매수 | 주4 | 닉 매도 | 당기 보유 | 매매회전율 | 동종 유형 평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A) | 주식의 평균가액(B) | (A/B) | 매매회전율 ^{주 1)} |
| 90,022 | 3,465,751,520 | 139,864 | 5,997,204,896 | 948,901,010 | 632 | 32.04 |

주)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활용합니다.(공모펀드(ETF제외), 증권펀드 기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원]

|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 | | | | | | | |
|---------------------|-----------------|------------|------------------|-----------------|------------|-----------------|--|--|
| | | 당기 | | 전기 | | | | |
| 구분 | 거래금액 | 거래비용주1) | | 거래금액 | 거래비용주1) | | | |
| 1 = | (A) | 금액 (B) | 거래비용 비율 (B/A) | (A) | 금액 (B) | 거래비용 비율(B/A) | | |
| 주식 | 9,701,822,931 | 11,806,423 | 0.122 | 9,511,471,656 | 11,043,505 | 0.116 | | |
| 주식 이외의 증권 (채권 등) | 55,988,715,005 | 2,695,150 | 0.005 | 175,084,767,500 | - | - | | |
| 부동산 | - | - | - | - | -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 - | -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 - | - | - | | |
| 합계 | 184,596,239,156 | 11,043,505 | 0.022 | 53,207,987,666 | 33,893,072 | 0.006 | | |

주)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생략 가능합니다.

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단위 : 원]

| 재무상태표 | | | | | | | | |
|-----------|----------------|----------------|----------------|--|--|--|--|--|
| 항 목 | 제 9 기 | 제 8 기 | 제 7 기 | | | | | |
| 8 = | 2024.11.03 | 2023.11.03 | 2022.11.03 | | | | | |
| 운용자산 | 12,720,320,249 | 15,647,203,893 | 20,998,833,922 | | | | | |
| 현금및예치금 | 324,026,414 | 383,920,374 | 300,692,933 |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24,026,414 | 383,920,374 | 300,692,933 | | | | | |
| 대출채권 | 1,600,000,000 | 2,500,000,000 | 0 | | |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600,000,000 | 2,500,000,000 | 0 | | | | | |
| 유가증권 | 10,796,293,835 | 12,763,283,519 | 20,698,140,989 | | | | | |
| 지분증권 | 444,176,440 | 2,333,565,826 | 1,715,486,100 | | | | | |
| 채무증권 | 9,036,561,305 | 10,429,717,693 | 18,982,654,889 | | | | | |
| 수익증권 | 1,315,556,090 | 0 | 0 | | | | | |



| 기타자산 | 51,174,271 | 167,736,660 | 91,471,529 |
|------------|----------------|----------------|----------------|
|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0 | 51,691,416 | 31,249,752 |
| 미수이자 | 47,026,651 | 83,235,137 | 55,598,827 |
| 미수배당금 | 4,147,620 | 5,035,832 | 750,000 |
| 선급비용 | 0 | 27,774,275 | 3,872,950 |
| 자 산 총 계 | 12,771,494,520 | 15,814,940,553 | 21,090,305,451 |
| 기타부채 | 840,674,985 | 673,567,866 | 1,402,891,414 |
|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0 | 56,965,250 | 0 |
| 해지미지급금 | 54,760,752 | 34,404,083 | 64,442,392 |
| 수수료미지급금 | 86,240 | 140,118 | 163,382 |
| 미지급이익분배금 | 785,827,993 | 582,058,415 | 1,338,285,640 |
| 부 채 총 계 | 840,674,985 | 673,567,866 | 1,402,891,414 |
| 원 본 | 11,930,819,535 | 15,141,372,687 | 19,687,414,037 |
| 자 본 총 계 | 11,930,819,535 | 15,141,372,687 | 19,687,414,037 |
| 부채 및 자본 총계 | 12,771,494,520 | 15,814,940,553 | 21,090,305,451 |
| | | | |

주)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 9 기 | 제 8 기 | 제 7 기 |
| | 2023.11.04 ~ | 2022.11.04 ~ | 2021.11.04 ~ |
| 운용수익(운용손실) | 918,345,923 | 734,543,825 | 84,282,472 |
| 투자수익 | 451,772,963 | 516,845,393 | 345,563,749 |
| 이자수익 | 411,258,447 | 459,814,437 | 309,251,212 |
| 배당금수익 | 40,514,516 | 57,030,956 | 36,312,537 |
|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764,793,999 | 771,264,989 | 1,230,009,620 |
| 지분증권매매차익 | 542,916,825 | 519,753,504 | 1,054,814,708 |
| 채무증권매매차익 | 177,222,300 | 163,738,896 | 147,609,181 |
| 지분증권평가차익 | 17,473,979 | 87,772,589 | 27,585,731 |
| 채무증권평가차익 | 27,180,895 | 0 | 0 |
|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298,241,947 | 553,686,693 | 1,491,345,742 |
| 지분증권매매차손 | 138,956,793 | 278,784,022 | 1,069,042,129 |
| 채무증권매매차손 | 15,160,217 | 122,187,626 | 76,824,551 |
| 지분증권평가차손 | 144,124,937 | 89,739,516 | 148,633,318 |
| 채무증권평가차손 | 0 | 62,975,529 | 196,845,744 |
| 기타운용수익 | 20,908 | 120,136 | 54,845 |
| 운용비용 | 1,193,608 | 1,661,750 | 1,459,744 |
| 매매수수료 | 593,548 | 875,750 | 138,264 |
| 기타운용비용 | 600,060 | 786,000 | 1,321,480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917,152,315 | 732,882,075 | 82,822,728 |
|--------------|-------------|-------------|------------|
|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 69.06 | 41.93 | 3.44 |

주)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좌,백만원]

| 2. 012 20 | X 2-11 L 2 | | | | 회계기 | 기 가 중 | | : 11. 7 22 | |
|---------------------------------|---------------------------|--------|--------|--------|--------|---------------------------------------|--------|------------|--------|
| 구분 | 기간 | 기간초 | 잔고 | 설 | | · · · · · · · · · · · · · · · · · · · | 매 | 기간밀 | 잔고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 2021/11/04~ 2022/11/03 | 29,816 | 31,778 | 14,909 | 15,964 | 25,165 | 26,936 | 19,687 | 21,026 |
| 운용펀드 | 2022/11/04~ 2023/11/03 | 19,687 | 19,687 | 21,257 | 21,776 | 27,141 | 27,811 | 15,141 | 15,723 |
| | 2023/11/04~ 2024/11/03 | 15,141 | 15,141 | 15,095 | 15,899 | 18,888 | 19,823 | 11,931 | 12,717 |
| | 2021/11/04~ 2022/11/03 | 2,549 | 2,703 | 121 | 128 | 2,464 | 2,624 | 205 | 216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2022/11/04~ 2023/11/03 | 205 | 205 | 831 | 853 | 871 | 895 | 176 | 181 |
| | 2023/11/04~ 2024/11/03 | 176 | 176 | 600 | 630 | 446 | 468 | 335 | 354 |
| | 2021/11/04~ 2022/11/03 | 1,685 | 1,791 | 627 | 668 | 1,420 | 1,512 | 892 | 944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2022/11/04~ 2023/11/03 | 892 | 892 | 1,706 | 1,750 | 1,680 | 1,725 | 970 | 1,000 |
| | 2023/11/04~ 2024/11/03 | 970 | 970 | 1,304 | 1,363 | 1,656 | 1,723 | 647 | 685 |
| | 2021/11/04~ 2022/11/03 | 17,013 | 17,988 | 2,269 | 2,400 | 9,801 | 10,352 | 9,481 | 9,922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 2022/11/04~ 2023/11/03 | 9,481 | 9,481 | 6,067 | 6,209 | 11,070 | 11,320 | 4,853 | 4,978 |
| | 2023/11/04~ 2024/11/03 | 4,853 | 4,853 | 3,362 | 3,528 | 6,206 | 6,468 | 2,133 | 2,246 |
| | 2021/11/04~ 2022/11/03 | 2,698 | 2,864 | 9,699 | 10,284 | 10,322 | 10,939 | 2,075 | 2,189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2022/11/04~ 2023/11/03 | 2,075 | 2,075 | 10,555 | 10,762 | 11,035 | 11,252 | 1,709 | 1,760 |
| | 2023/11/04~ 2024/11/03 | 1,709 | 1,709 | 8,365 | 8,790 | 8,626 | 9,049 | 1,496 | 1,581 |
| | 2021/11/04~ 2022/11/03 | 3,571 | 3,795 | 0 | 0 | 0 | 0 | 3,571 | 3,775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C-I) | 2022/11/04~ 2023/11/03 | 3,571 | 3,571 | 0 | 0 | 0 | 0 | 3,632 | 3,745 |
| (5 1) | 2023/11/04~ 2024/11/03 | 3,632 | 3,632 | 0 | 0 | 0 | 0 | 3,667 | 3,880 |
| | 2021/11/04~ 2022/11/03 | 1 | 1 | 1 | 1 | 0 | 0 | 2 | 2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금전신탁(C-W) | 2022/11/04~ 2023/11/03 | 2 | 2 | 0 | 0 | 0 | 0 | 2 | 2 |
| | 2023/11/04~ 2024/11/03 | 2 | 2 | 0 | 0 | 2 | 2 | 0 | 0 |



| | 2021/11/04~ 2022/11/03 | 1,497 | 1,588 | 189 | 200 | 174 | 185 | 1,512 | 1,592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 | 2022/11/04~ 2023/11/03 | 1,512 | 1,512 | 166 | 170 | 313 | 320 | 1,445 | 1,487 |
| 17 Ca(C1) | 2023/11/04~ 2024/11/03 | 1,445 | 1,445 | 65 | 68 | 130 | 136 | 1,422 | 1,502 |
| 수수료미징구- | 2021/11/04~ 2022/11/03 | 390 | 415 | 1,907 | 2,036 | 792 | 842 | 1,505 | 1,594 |
| 온라인- 퇴직연금 | 2022/11/04~ 2023/11/03 | 1,505 | 1,505 | 1,018 | 1,045 | 950 | 974 | 1,662 | 1,715 |
| (C-Pe) | 2023/11/04~ 2024/11/03 | 1,662 | 1,662 | 1,028 | 1,071 | 1,059 | 1,108 | 1,684 | 1,783 |
| 수수료미징구- | 2021/11/04~ 2022/11/03 | 269 | 286 | 11 | 11 | 14 | 14 | 266 | 281 |
| 오프라인- 개인연금 | 2022/11/04~ 2023/11/03 | 266 | 266 | 8 | 8 | 0 | 0 | 288 | 297 |
| (C-P2) | 2023/11/04~ 2024/11/03 | 288 | 288 | 7 | 7 | 15 | 16 | 289 | 305 |
| 수수료미징구- | 2021/11/04~ 2022/11/03 | 382 | 407 | 222 | 237 | 169 | 180 | 435 | 461 |
| 온라인- 개인연금 (C-P2e) | 2022/11/04~ 2023/11/03 | 435 | 435 | 154 | 158 | 108 | 110 | 507 | 524 |
| | 2023/11/04~ 2024/11/03 | 507 | 507 | 77 | 80 | 264 | 275 | 336 | 3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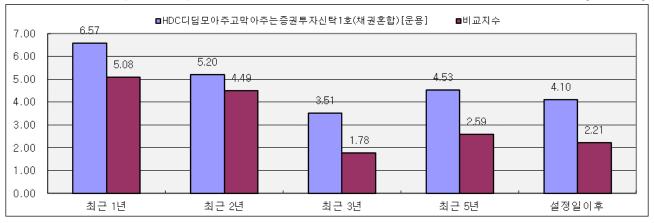
주)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과거의 투자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 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





| | 최초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최근 3 년 | 최근 5 년 | 설정일이후 |
|------------------------------|------------|----------------------------|----------------------------|----------------------------|----------------------------|-------|
| 종류 | 설정일 | 2023/11/04 ~ 2024/11/03 | 2022/11/04 ~ 2024/11/03 | 2021/11/04 ~ 2024/11/03 | 2019/11/04 ~ 2024/11/03 | (%) |
| 투자신탁(운용) | 2015-11-04 | 6.57 | 5.20 | 3.51 | 4.53 | 4.10 |
| 비교지수 | 2015-11-04 | 5.08 | 4.49 | 1.78 | 2.59 | 2.21 |
| 수익률 변동성(%) | 2015-11-04 | 2.54 | 2.31 | 2.31 | 2.79 | 2.53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015-11-06 | 5.58 | 4.23 | 2.55 | 3.57 | 3.13 |
| 비교지수 | 2015-11-06 | 5.08 | 4.49 | 1.78 | 2.59 | 2.21 |
| 수익률 변동성(%) | 2015-11-06 | 2.54 | 2.32 | 2.31 | 2.80 | 2.53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2015-11-12 | 5.85 | 4.49 | 2.81 | 3.83 | 3.40 |
| 비교지수 | 2015-11-12 | 5.08 | 4.49 | 1.78 | 2.59 | 2.26 |
| 수익률 변동성(%) | 2015-11-12 | 2.54 | 2.31 | 2.31 | 2.80 | 2.5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2015-11-04 | 5.27 | 3.92 | 2.24 | 3.26 | 2.82 |
| 비교지수 | 2015-11-04 | 5.08 | 4.49 | 1.78 | 2.59 | 2.21 |
| 수익률 변동성(%) | 2015-11-04 | 2.54 | 2.32 | 2.31 | 2.80 | 2.53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2015-11-30 | 5.69 | 4.33 | 2.65 | 3.67 | 3.21 |
| 비교지수 | 2015-11-30 | 5.08 | 4.49 | 1.78 | 2.59 | 2.25 |
| 수익률 변동성(%) | 2015-11-30 | 2.54 | 2.31 | 2.31 | 2.80 | 2.5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 2015-11-04 | 5.79 | 4.43 | 2.75 | 3.77 | 3.34 |
| 비교지수 | 2015-11-04 | 5.08 | 4.49 | 1.78 | 2.59 | 2.21 |
| 수익률 변동성(%) | 2015-11-04 | 2.54 | 2.31 | 2.31 | 2.80 | 2.5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 금전신탁(C-W) | 2016-01-21 | 6.40 | 4.94 | 3.23 | 2.07 | 1.17 |
| 비교지수 | 2016-01-21 | 5.29 | 4.60 | 1.85 | 0.79 | 0.45 |
| 수익률 변동성(%) | 2016-01-21 | 2.53 | 2.31 | 2.30 | 2.06 | 1.8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 | 2015-11-20 | 5.58 | 4.23 | 2.55 | 3.57 | 3.13 |
| 비교지수 | 2015-11-20 | 5.08 | 4.49 | 1.78 | 2.59 | 2.27 |
| 수익률 변동성(%) | 2015-11-20 | 2.54 | 2.32 | 2.31 | 2.80 | 2.53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e) | 2017-12-14 | 5.90 | 4.54 | 2.86 | 3.88 | 3.34 |
| 비교지수 | 2017-12-14 | 5.08 | 4.49 | 1.78 | 2.59 | 2.06 |
| 수익률 변동성(%) | 2017-12-14 | 2.54 | 2.31 | 2.31 | 2.80 | 2.6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2) | 2018-04-27 | 5.69 | 4.33 | 2.65 | 3.67 | 3.01 |
| 비교지수 | 2018-04-27 | 5.08 | 4.49 | 1.78 | 2.59 | 2.08 |



| 수익률 변동성(%) | 2018-04-27 | 2.54 | 2.32 | 2.31 | 2.80 | 2.57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2e) | 2017-12-13 | 5.95 | 4.59 | 2.91 | 3.93 | 3.41 |
| 비교지수 | 2017-12-13 | 5.08 | 4.49 | 1.78 | 2.59 | 2.08 |
| 수익률 변동성(%) | 2017-12-13 | 2.54 | 2.31 | 2.31 | 2.80 | 2.60 |

주1)비교지수: (국고채권 1-2년 X 70% + KOSPI X 15% + CALL X 15%)

주2)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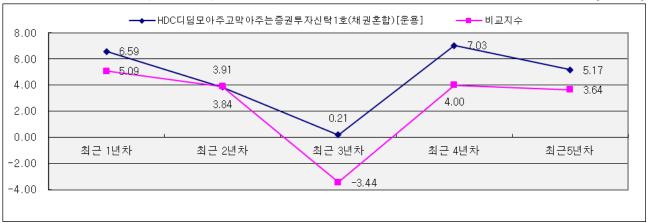
주3)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 전체(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 전체(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4)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 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5)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 최초 | 최근 1 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종류 | 설정일 | 2023/11/04 ~ 2024/11/03 | 2022/11/04 ~ 2023/11/03 | 2021/11/04 ~ 2022/11/03 | 2020/11/04 ~ 2021/11/03 | 2019/11/04 ~ 2020/11/03 |
| 투자신탁(운용) | 2015-11-04 | 6.59 | 3.84 | 0.21 | 7.03 | 5.17 |
| 비교지수 | 2015-11-04 | 5.09 | 3.91 | -3.44 | 4.00 | 3.64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015-11-06 | 5.60 | 2.88 | -0.73 | 6.04 | 4.20 |
| 비교지수 | 2015-11-06 | 5.09 | 3.91 | -3.44 | 4.00 | 3.64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2015-11-12 | 5.86 | 3.14 | -0.48 | 6.31 | 4.46 |
| 비교지수 | 2015-11-12 | 5.09 | 3.91 | -3.44 | 4.00 | 3.6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2015-11-04 | 5.28 | 2.58 | -1.02 | 5.73 | 3.89 |
| 비교지수 | 2015-11-04 | 5.09 | 3.91 | -3.44 | 4.00 | 3.6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2015-11-30 | 5.70 | 2.99 | -0.63 | 6.15 | 4.31 |
| 비교지수 | 2015-11-30 | 5.09 | 3.91 | -3.44 | 4.00 | 3.6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 2015-11-04 | 5.81 | 3.09 | -0.53 | 6.26 | 4.41 |



| 비교지수 | 2015-11-04 | 5.09 | 3.91 | -3.44 | 4.00 | 3.64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 금전신탁(C-W)' | 2016-01-21 | 6.41 | 3.50 | -0.13 | 0.71 | - |
| 비교지수 | 2016-01-21 | 5.31 | 3.91 | -3.44 | -1.56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 | 2015-11-20 | 5.60 | 2.88 | -0.73 | 6.05 | 4.20 |
| 비교지수 | 2015-11-20 | 5.09 | 3.91 | -3.44 | 4.00 | 3.6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e) | 2017-12-14 | 5.92 | 3.19 | -0.43 | 6.36 | 4.52 |
| 비교지수 | 2017-12-14 | 5.09 | 3.91 | -3.44 | 4.00 | 3.6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2) | 2018-04-27 | 5.70 | 2.99 | -0.63 | 6.15 | 4.31 |
| 비교지수 | 2018-04-27 | 5.09 | 3.91 | -3.44 | 4.00 | 3.6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2e) | 2017-12-13 | 5.97 | 3.24 | -0.38 | 6.42 | 4.57 |
| 비교지수 | 2017-12-13 | 5.09 | 3.91 | -3.44 | 4.00 | 3.64 |

주1)비교지수: (국고채권 1-2년 X 70% + KOSPI X 15% + CALL X 15%)

주2)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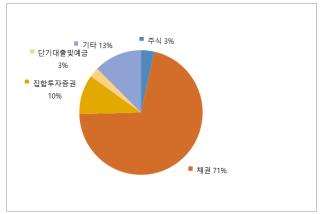
주5)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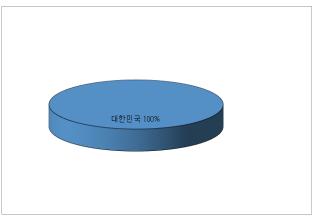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4.11.03 현재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_ | | | |
|-----------|--------|---------|--------|----------------|--------|--------|--------|----------|--------|-------------------|---------|----------|
| | | 증 | 권 | | 파생상품 | | | 특별 | 자산 | 단기 | | |
| 통화별 구분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부동산 | 실물 자산 | 기타 | _ , 대출 및 예금 | 기타 | 타 창산 총액 |
| 대한 | 444 | 9,083 | 0 | 1,316 | 0 | 0 | 0 | 0 | 0 | 324 | 1,605 | 12,771 |
| 민국 | (3.48) | (71.12) | (0.00) | (10.30) | (0.00) | (0.00) | (0.00) | (0.00) | (0.00) | (2.54) | (12.56) | (100.00) |
| 자산 | 444 | 9,083 | 0 | 1,316 | 0 | 0 | 0 | 0 | 0 | 324 | 1,605 | 12,771 |
| 합계 | (3.48) | (71.12) | (0.00) | (10.30) | (0.00) | (0.00) | (0.00) | (0.00) | (0.00) | (2.54) | (12.56) | (100.00) |

주)()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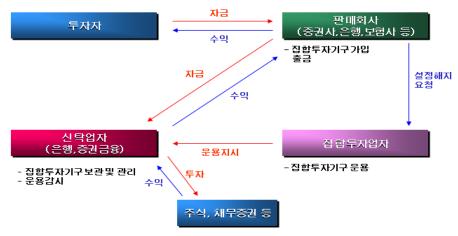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회사명 | HDC자산운용주식회사 | | | | |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11 대영빌딩 2층(T. 3215-3000) | | | | | |
| | www.hdcasset.com | | | | | |
| | 2000. 3. 9. 예비허가 신청 | | | | | |
| | 2000. 6. 27. 아이투자신탁운용㈜ 설립 | | | | | |
| 취미 여취 | 2000. 7. 24. 영업허가 및 수익증권 최초상품 인가 취득 | | | | | |
| 회사 연혁 | 2000. 8. 29.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 | | | | |
| | 2009. 5. 22. 본점 사무실 이전 | | | | | |
| | 2012. 1. 2. HDC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 | | | | |
| 자본금 자본금: 158억 | | | | | | |
| 주요 주주현황 | 요 주주현황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87.34%, 특수관계인 포함), 기타(12.66%) | | | | | |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 시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 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 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전자등록기관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전 자등록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재 | 무상태표 | | 손익계산서 | | | | |
|-----------|-------------|-------------|------------|---------------------------|---------------------------|--|--|
| | 제 25 기 | 제 24 기 | | 제 25 기 | 제 24 기 | | |
| 항 목 | 2024.12.31. | 2023.12.31. | 항 목 | ′24.01.01 ~ ′24.12.31. | ′23.01.01 ~ ′23.12.31. | | |
| 유동자산 | 26,620 | 26,945 | 6,945 영업수익 | | 6,997 | | |
| 고정자산 | 974 | 498 영업비용 | | 5,352 | 5,422 | | |
| 자산총계 | 27,594 | 27,443 | 영업이익 | 1,147 | 1,574 | | |
| 유동부채 | 450 | 421 | 영업외수익 | 0 | 8 | | |
| 고정부채 | 279 | 260 | 영업외비용 | 8 | 0 | | |
| 부채총계 | 729 | 680 | 영업외이익 | -8 | 8 | | |
| 자본금 | 15,800 | 15,800 | HOUT 가져스이이 | 1 1 2 0 | 4 500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0 | 0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139 | 1,582 | | |
| 이익잉여금 | 11,065 | 10,962 | 법인세비용 | 246 | 355 | | |
| 자본총계 | 26,865 | 26,762 | 당기순이익 | 893 | 1,227 | | |



라. 운용자산 규모

[2025.04.23 기준 / 단위: 억원]

| | | 증권 | 집합투지 | 기구 | | □ ₽ | πLAH | | 특별 | 승하 | 투자 | |
|-----|-------|-----|------|----------|-------|------------|----------|-------|----------|----------|------------|--------|
| 구분 | 주신 | 혼합 | 혼합 | 채권 | 재간접 | 단기 금융 | 파생 상품 | 부동산 | 극글 자산 | 혼합 자산 | - 구사 일임 | 총계 |
| | 下省 | 주식 | 채권 | 세건 | 세신엽 | _ ਰ | 6 五 | | 시선 | 시선 | 28 | |
| 수탁고 | 2,934 | 159 | 554 | 4,331 | 1,520 | 113 | 500 | 2,315 | 517 | 8,286 | 1,750 | 22,979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회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명 | 농협은행 주식회사 | | | | |
|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T. 02-2080-5114 / www.nonghyup.com) | | | | | | |
| | 회사 연혁 등 | 1961. 06.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양 기구를 통합 의결 1961. 08. 통합 농협조합 발족 1967. 01. 농협기본법 공포 2001. 10. "세계협동조합(ICA) 서울총회" 개최 2007. 09. 정보보호 국제표준 ISO27001 인증 획득 2008. 03. 국내최초 IB센터 설립 2012. 03. 농협은행 출범 | | | | |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의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 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 개요

| 회 사 명 | 하나펀드서비스㈜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02-6714-4600) |
|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www.keb.co.kr) 내 소개 참조. |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의무]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 개요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 | KIS채권평가㈜ | NICE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
| 설립일 | 2000.05.29. | 2000.06.20. | 2000.06.16. | 2011.06.09. |



| 연락처 | 02-399-3350 | 02-3215-1400 | 02-398-3900 | 02-721-5300 |
|----------------------|-----------------|----------------|-----------------|-------------------|
|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koreaap.com | www.bond.co.kr | www.nicepni.com | www.fnpricing.com |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 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의무와 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 한 수익증권의 총좌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①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②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③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생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④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



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 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 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 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는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④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⑦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⑧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⑩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①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 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 령 제2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



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 ①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 ②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 ③ 집합투자규약에 다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 ②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 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 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



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 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②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⑤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 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 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 이행실적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합니다.
-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 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모집합 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 신설 및 종류 수익증권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설정 시부터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6개월간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당사의 대표 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 서 당사가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 2. 집합투자기구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3) 회계감사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 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 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 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 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 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 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 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⑤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hdcasset.com)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 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 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 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단위:백만원]

| 이해관계인 | | 기페이 조리 | 자산의 분류 | 71711701 |
|--------|----|--------|--------|-----------|
| 성명(상호) | 관계 | 거래의 종류 | 시선의 군규 | 거래금액 |
| 미래에셋증권 | 기타 | 중개거래 | 주식 | 876.59848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최근 1년간 내역)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 기준

| 구분 |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
| 증권 및 장내 |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 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사를 선 정합니다. |
| 파생상품의 거래 |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매월 1회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하여 선정하며, 취득점수가 동일한 경우 Compliance, 시장정보제공능력, 매매체결능력 항목순으로 상위점수를 취득한 순서에 따라 중개사 순위를 구분 결정합니다. 단, 준법감시팀 및 RM 제시, 부정연루 등 결격사유 발생 중개사의 선정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목적 | 안정적인 장기수익 추구 |
|-----------|-----------------|
| 투자금액 | 10억원 |
| 투자기간 | 2018.02.09 ~ 현재 |
| 자금회수계획 | 1년 이상 장기투자 |
| 투자금 회수 현황 | -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 용어의 정리

| 용 어 | 내 용 |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 |
| 0077108 |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 | |
| | 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 |
| |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 투자회사 |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 집합투자증권 |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수익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 폐쇄형 |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 | |
| エハら | 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해당 모펀드에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 | |
| *16*17 | 니다. |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 선취판매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 후취판매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 |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 | |
| 판매수수료 | 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 | |
| | 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 다. | |
| | 는.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 | |
| 환매수수료 | |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 수익자총회 | | |
| (=수익자총회, |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 |
| 지합수익자총회)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
|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 | |
| 한국금융투자협회 | 회 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 |
| 펀드코드 | 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집 | |
| | 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 받는 | |
| ELOT |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 |
|------------------|--|
| 비교지수 | 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
| |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 |
| 레버리지효과 | 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
| |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금리스왑 | 거래상대방과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 |
| ㅁ니끄럽 | 를 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
|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
| |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 |
| 성과보수 | 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 |
| | 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 |
| | 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 |
| | 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 |
| 전구인구전후 시세 | 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특정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가 발 |
| | 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미리 정하여진 전환가격에 기초하여 주식으로 |
| |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 |
| | 합니다. |